NEWS LETTER OF KOREA CUSTOMS CONSULTING LLC

2019 MAR

본 자료의 무단복제 및 무단도용을 금지합니다.

KCCL
Korea Customs Consulting LLC

목 차

- 무역관련 공통 ISSUE -

· (FTA) ----------3page

· (AEO) ----------12page

· (기타) ----------13page

- 업계별 ISSUE -

· (철강) ----------25page

· (목재) ----------29page

· (모바일) ----------33page

FTA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0 년차.. 관세혜택에 수출 36%↑

지난 2010 년 1 월 1 일자로 우리나라와 인도의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후 10 년간 양국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 국빈 방문해 한-인도 정상회담을 가질예정이어서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CEPA 체결 당시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신흥 거대 경제권의 대표 주자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이 한-인도 CEPA 발효 10 년차를 맞아 '한-인도 CEPA 교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양국의 교역 규모는 215 억달러로 발효 1 년차인 2010 년 대비 25.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교역 증가율(27.9%)에 비해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인도로의 수출은 2010 년 114 억달러에서 작년 156 억달러로 36.8% 증가해 세계 수출 증가율(29.8%)을 웃돈다. 같은 기간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7.5%), 일본(8.2%)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 반면 수입은 2010 년 57 억달러에서 작년 59 억달러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세계 수입 증가율(25.9%)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가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반도체 집적회로, 열연강판, 석유조제품, 폴리 염화비닐, 자동차 기타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인도 수출품 대부분이 한-인도 CEPA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산 철강은 한-인도 CEPA 에 따라 기본관세가 인상될 우려도 적다는 점도 수출이 증가하는 한 원인이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물품은 나프타, 알루미늄괴, 합금철, 아연괴, 납괴, 철광 순이다. 원재료가 대부분이며, 화학제품과 사료 등도 일부 수입된다.

수입 1 위 품목인 나프타의 경우 협정발효 당시에는 기본관세가 1%였으나 현재 0%로 인하돼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합금철·아연괴 등 원재료는 한-인도 CEPA 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연괴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년 이후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기준 한-인도 CEPA 활용률은 각각 수출 70.9%, 수입 57.3%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FTA 활용률(수출 73.5%, 수입 75.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인도 CEPA 가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관세인하 폭도 크지 않다는 점도 수출입 시 CEPA 협정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관세청은 "인도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고, 통관시간 감축 등 물류비용 절감을 도와줄 한-인도 간 전자 원산지 자료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7 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지난 2015 년 이후 4 년 만이다.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고 실질협력 확대 및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3 억 5000 만명을 보유한 세계 2 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는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 규모만도 2 조 6000 억달러로 세계 6 위 규모다. (출처:이데일리)

★ KCC 1 분강의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들과 FTA 를 맺고 있는데 인도와 맺은 협정은 왜 FTA 라는 용어대신 CEPA 라는 용어를 쓸까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으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및 투자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써 이는 FTA 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시장개방에 있어 반감이 있는 인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FTA 라는 용어대신 CEPA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FTA

관세청 "첫 수출부터 FTA 활용 땐 수출 생존율 훨씬 높아"

최초 수출부터 FTA 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수출 생존율이 신생 수출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FTA 컨설팅 이후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한 261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 월 21 일부터 12 월 20 일까지 수출 지속 여부와 애로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FTA 를 활용해 최초 수출을 시작한 중소기업이 다음해에도 수출을 지속하는 비율(수출생존율)은 75.4%로 신생 수출기업 평균(50.8%) 보다 훨씬 높다.

4 년차 수출 생존율도 신생 수출기업 평균이 20.8%인 반면, FTA 를 활용한 전환 기업은 58.1%가 수출을 지속했다.

이밖에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경영자와 임직원의 해외지향성(73%), 자사 제품의 해외 경쟁력 자신감(68%), 협소한 국내시장 극복(6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6.1%가 'FTA 활용이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고, 69.0%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수출 전환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규격·품질 인증 복잡(46.6%), 자금 부족(41.7%), 해외 바이어와의 컨택 어려움(38.9%) 순으로 답했다. FTA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은 16.5%에 그쳤다.

설문 대상기업이 관세청의 FTA 컨설팅을 받고 수출을 시작한 기업들인 만큼, 일반 중소 수출기업에 비해 FTA 활용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년 기준 수출을 중단한 기업들은 내부요인으로 제품 경쟁력 저하(18.8%), 전문 인력 이탈(17.4%), 외부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23.6%), 경기침체(20.0%) 등을 꼽았다.

반면 수출 지속기업은 내부요인으로 우수한 경영진(16.8%), 가격 경쟁력(15.2%) 등을, 외부요인으로 해외판로 확보(26.9%)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했다.

관세청 측은 "성공적 수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FTA 를 활용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청 '수출 전환기업 인큐베이팅 컨설팅'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전환기업 인큐베이팅 컨설팅(YES FTA 컨설팅)은 최초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수출통관 환급 절차부터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모든 것을 지원하는 원스톱 컨설팅이다.

(출처: 뉴스 1 코리아)

★ KCC 1 분강의

우리나라는 1999 년 12 월 한칠레 FTA 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주요국가들과 FTA 를 체결해 왔습니다. FTA 의 관세인하는 즉시철폐 또는 미양허제품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체결기간이 오래될수록 관세가 상당부분 많이 인하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시 FTA 를 활용하시면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으며 처음하는 FTA 업무로 다소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YES FTA 컨설팅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ES FTA 컨설팅은 신규 수출 혹은 신규 FTA 를 진행하는 업체에 관세법인을 연결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하게 FTA 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므로 활용을 원하신다면 당사 FTA 팀에 문의해주시면됩니다.

FTA 팀 : 서원희관세사 070-8670-1752

FTA

국수·김치 등 82 개 품목,

‘원산지 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에 추가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에 ▲국수(HSK 제 1902.19-1000 호), ▲김치(HSK 제 2005.99-1000 호), ▲당면(HSK 제 1902.19-2000 호) 등 82 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2 월 26 일 입안예고했다.

‘원산지 간이발급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함으로써 원산지를 입증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와 원산지 증명에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HS 10 단위 기준으로, 자동차용 축전지, 보일러, 국수, 김치 등 82 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저:한국관세무역개발원)

★ KCC 1 분강의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 구분하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최종 수출물품이 국산(또는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써 원재료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최종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근거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

·국내제조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하였으나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써 이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근거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

【 원산지 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 추가 품목(안) 】

연번	HS Code	품명	연번	HS Code	품명
1	1902.19-1000	국수	189	8414.59-9000	기타의 팬
2	1902.19-2000	당면	19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1902.19-3000	냉면	191	8414.80-9190	기체 펌프(항공기용 제외)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192	8414.80-9210	기체 압축기(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미만인 것)
6	1905.90-1090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제외)	193	8414.80-9220	기체 압축기(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이상 373 킬로와트 미만인 것)
7	2005.99-1000	김치	194	8414.80-9230	기체 압축기(사용동력이 373 킬로와트 이상인 것)
21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195	8414.80-9900	기체 압축기(기타의 것)
26	3305.10-0000	샴푸	196	8415.10-2010	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27	3401.30-0000	바디워시	198	8415.10-9020	공기조절기(창형·벽형 제외)(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35	3904.22-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것 제외)	199	8417.10-2010	철강 처리용 노(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41	3917.40-0000	플리스틱 연결구	201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42	3918.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나 바닥깔개(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2	8419.50-9000	열교환기(항공기용,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제외)
47	3920.51-0000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재질 외의 아크릴중합체 것)으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203	8420.10-9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
51	3923.21-0000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204	8421.23-1000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필터) 제 87 류 차량의 것
54	4002.11-0000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205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56	4002.59-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라텍스	206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봉지용 기계
58	4009.21-0000	금속으로 보강되거나 결합 된 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 제외한다)	207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59	4009.31-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 제외한다)	208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60	4009.3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	209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70	5402.11-0000	아라미드로 만든 강력사	210	8422.40-9020	자동결속기
71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11	8422.40-9030	진공포장기
83	5503.20-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이형단면 인 것)	212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	5503.90-0000	기타의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213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폴리에스테르의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폴리프로필렌의 것 제외)			
147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평판압연제품(폭인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214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148	7227.90-9090	합금강의 봉(기타의 것)[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215	8477.20-2000	압출기(플라스틱 공업용)
149	7306.50-0000	합금강의 봉 또는 관(기타의 것)[(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16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150	7307.91-0000	플랜지(flange)	217	8477.80-0000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153	7310.10-0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19	8479.82-1000	혼합기
158	7409.11-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반도체 제조용 제외)]	220	8479.82-4000	교반기
159	7409.21-9000	구리－아연합금으로 만든(황동)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23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160	7410.1	구리의 박	224	8481.4	안전밸브

	1-0000			0-0000	
162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225	8481.80-1010	밸브(전기 작동식의 것)
164	7502.20-0000	니켈 합금 괴	226	8481.80-1030	밸브(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166	7604.21-0000	알루미늄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227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180	8302.30-0000	비금속제 자동차 부착구	229	8482.10-9000	볼 베어링(내경이 100 밀리미터를 이하인 것 제외)
181	8302.42-0000	비금속제 가구 부착구	230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182	8403.10-1000	보일러(유류를 사용하는 것)	231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183	8403.10-3000	보일러(가스를 사용하는 것)	233	8483.30-900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186	8413.30-900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항공기, 기관차용, 선박용, 자동차용 제외)].	235	8483.50-9000	플라이휠(flywheel)과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block)을 포함한다]
187	8413.81-9000	기타 펌프	241	8507.80-0000	기타 축전지
188	8414.30-100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242	8514.40-900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AEO

관세청 "韓-터키 AEO MRA 전면이행"

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 월 1 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세계 81 개국이 도입한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다. 상호인정약정(MRA)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 년 10 월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지난 2014 년 6 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에 대해 논의해 왔다. 양국 관세청장은 지난해 11 월 터키에서 만나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수출입기업의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EO MRA 를 전면이행키로 합의했다.

한국-터키 AEO MRA 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터키로 수출할 때 물류비용 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이번 한국-터키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파이낸셜 뉴스)

기타

관세청 "영세업체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무담보원칙 도입"

올 상반기부터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무담보원칙이 도입된다.

또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해 해외 여행기간 동안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소수출입 기업 세제 혜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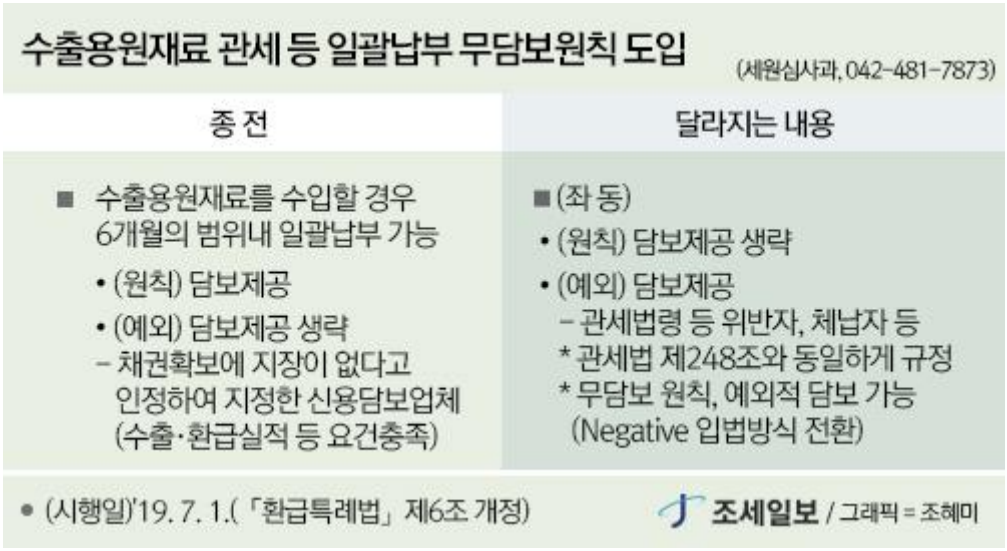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해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했다.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1 만 8000 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 억원 상당의 담보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회생기회를 확대했다.

이 제도는 사업체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것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제공의 생략도 가능하다.

수입업체의 경우 체납처분이 진행되면 수입하는 물품, 부동산 등이 압류돼 기업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안정적인 일자리 및 통관 규제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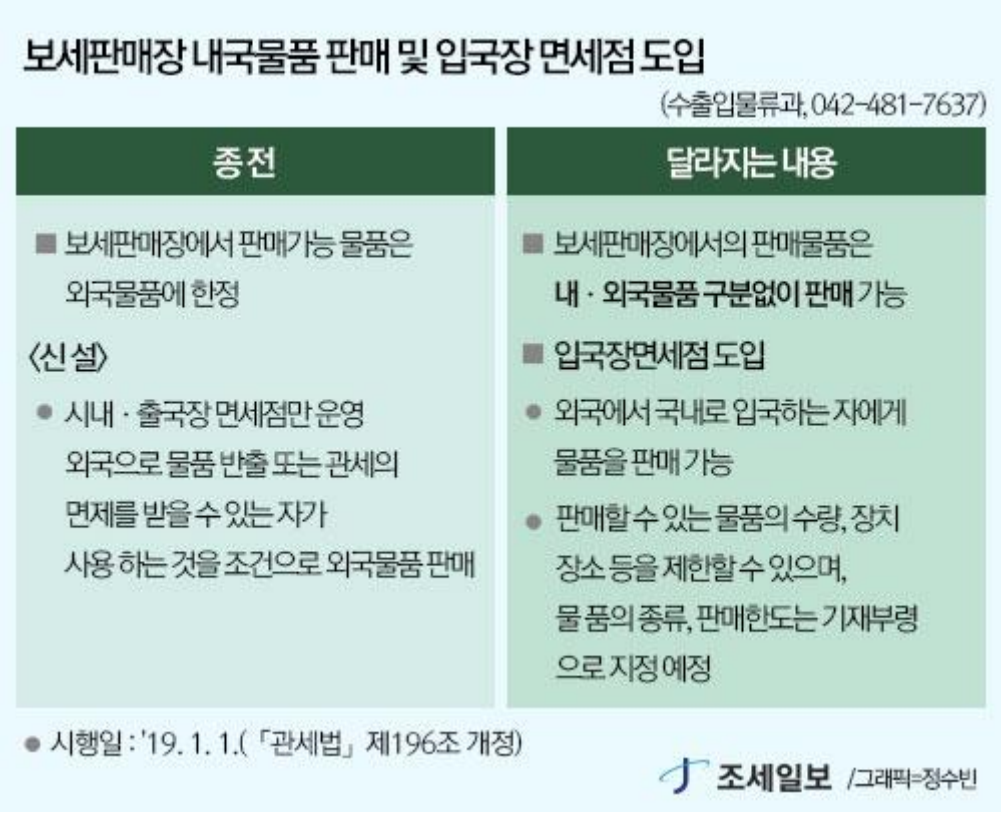

우선 입국장면세점 제도를 도입해 해외 여행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운영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범위 확대 및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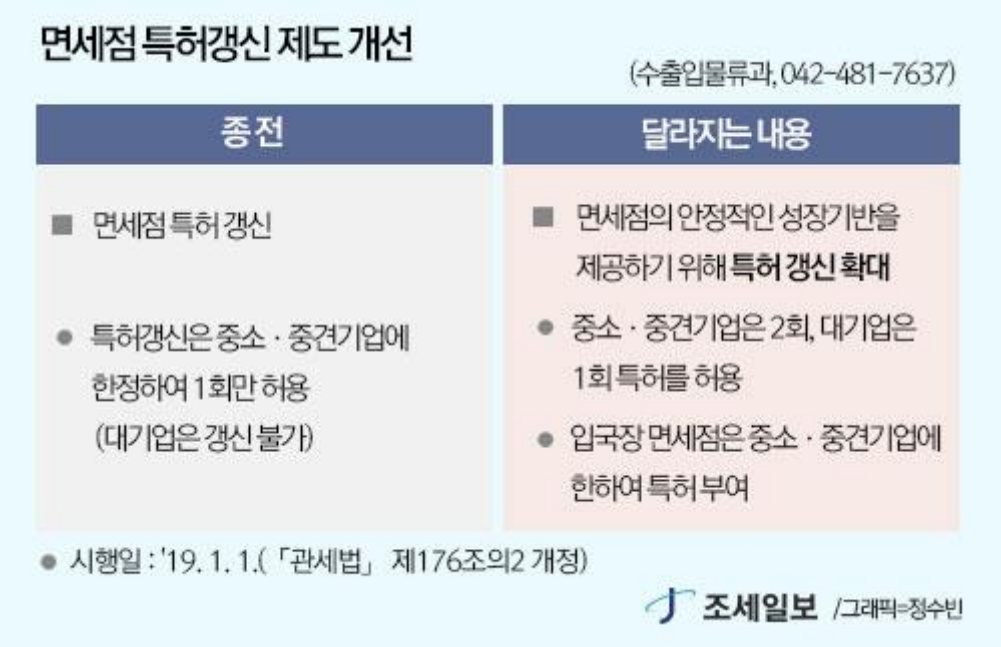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 년) 만료 시 특허갱신을 허용했다. 즉, 대기업은 1 회, 중소·중견기업은 2 회까지 특허갱신을 허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15 년간의 면세점 운영기간을 보장한다.

이로써 면세점 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기간이 보장되고, 면세점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성 확보가 예상된다. 기존의 경우 대기업은 갱신 불가, 중소·중견기업은 1 회 갱신이 가능했다.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악성 체화물품은 보세구역 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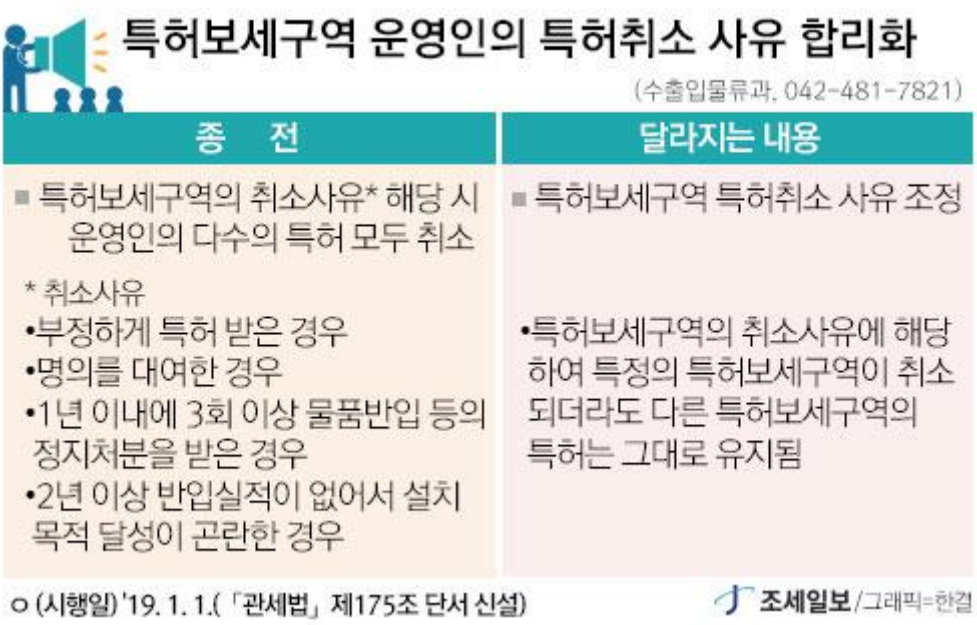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를 개선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A 법인이 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면세점을 운영하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보세창고와 보세공장까지도 특허가 취소됐다. 앞으로는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은 특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밖에 민원업무에 대한 인 허가 간주제를 도입해 민원업무의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인 허가 간주제란 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청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단순 반송조치에 그쳤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

(출처:뉴스 1 코리아)

기타

통관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新통관절차법'이 온다

현행 「관세법」에 포함된 통관절차 규정으로는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법」에서 분법(分法)된 '新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말 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2 월 14 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 203 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체계는 ▲조세실체 규정(145 개 조문 : 과세가격, 부과·징수, 세율, 권리구제 등), ▲통관절차 규정(189 개 조문 : 운송수단 및 운송, 보세구역, 수출입신고 등), ▲처벌 규정(60 개 조문 : 조사와 처분, 벌칙 등) 등 총 394 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관세법」이 세법 중 유일하게 조세실체 규정, 통관절차 규정, 처벌 규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과 달리 조세실체 규정과 통관절차 규정이 혼재돼 내용이 방대하고 법체계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통관절차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돼 사회적 요구가 높은 국민안전 강화 등의 사항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급변하는 무역·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하거나, 4 차 산업혁명 新기술 도입·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에도 제약이 많다며 법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새로 제정될 新 '통관절차법'에는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 및 수출입 지원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리콜 제도(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에 대한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 및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하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여행 증가,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소규모·개인통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관세법」은 대규모·기업형 통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에서다.

해외여행자 및 해외 직구의 비약적 증가로 「관세법」의 규율 대상이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그 이유다.

이와 함께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축적된 정보(송·수하인, 품명, 금액, 출발·경유지, 거래은행 등)를 바탕으로 세관장이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선별·검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 KCC 1 분강의

관세법과 新통관절차법를 둘로 나누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현행 관세법의 복잡하고 방대한 법체계와 함께, 조세관련성이 적은 통관절차 규정이 관세법에포함됨에 따라 국민·사회안전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며

유사한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세목 또는 행정목적별로 규정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반면, 관세법은 조세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이 혼재되어 내용이 방대하고 법체계 또한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 관세법은 대규모·기업형 통관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여행 증가와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소규모·개인통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조세실체와 관련된 법과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법으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타

특수관계 사전심사, 유효기간 2 년 연장 및 재심사 가능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 년에서 2 년 더 연장되고 재심사도 가능해진다. 일반 사전심사의 주요 심사사항에는 수출판매 해당 여부와 제 2~6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추가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관세법」제 37 조 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이 확대됐다며, 관련 수출입기업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1 월 29 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공제요소 해당 여부, ▲거래가격 배제 여부 등을 심사했는데, 올해엔 주요 심사사항에 ▲수출판매 해당 여부, ▲제 2~6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도 추가했다.

또한 특수관계 사전심사의 경우 3 년이었던 기존 유효기간을 2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할 계획(시행령 개정 예정)이며, 재심사도 가능해진다.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 KCC 1 분강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의거 수출입자간의 거래가격인 관세평가제 1 방법인 '거래가격법'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가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과세당국은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1 방법이 아닌 제 2,3,4,5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당국 및 수입자 또한 과세안정을 위해 특수관계자 사전심사 즉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제도를 통하여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기존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3 년이였으나 2 년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범위가 기존에 특수관계자의 거래로만 한정되었으나 비특수관계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참조할만한 대상입니다.

기타

장외작업장 제조·가공물품 이젠 재반입 없이 바로 수출입신고 가능

그동안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이나 보세공장 등(장외작업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 물품은 애초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에서 바로 수출입신고 및 폐기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2 월 15 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장외작업장에서 통관절차를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장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동 고시 제 24 조(장외 보세작업)에 따라 운영인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보세공장 및 기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경우 6 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여기서 제조·가공한 물품과 잉여 물품은 애초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애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및 폐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애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한편「관세법」제 201 조(운영인의 물품관리)에 신설된 매각절차 관련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주소·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려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 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때 운영인은 ▲반입신고서, ▲반출통고서, ▲그 밖에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 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엔 HS 10 단위가 아닌 6 단위 확인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신속한 회신을 위해 HS 6 단위 소호까지만 통지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빠른 결정을 위해 서면심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2 월 25 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HS 6 단위 소호 회신제도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HS 6 단위 소호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6 단위 소호 회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 고시(안) 제 9 조 제 5 항에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품목번호 6 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 단위 소호까지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동 고시 별지서식인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의 ' 신청사유' 항목에 '6 단위 소호 확인' 체크란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위원회의 빠른 결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위원회는 대면심사가 원칙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이 있어 특별한 쟁점이 없고, 단순 변경만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판결 등이 있어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쟁점사항이 없는 등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정 물품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자문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철강

美상무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반덤핑·상계관세 확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과 터키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조사 결과와 캐나다와 그리스에서 수입한 같은 품목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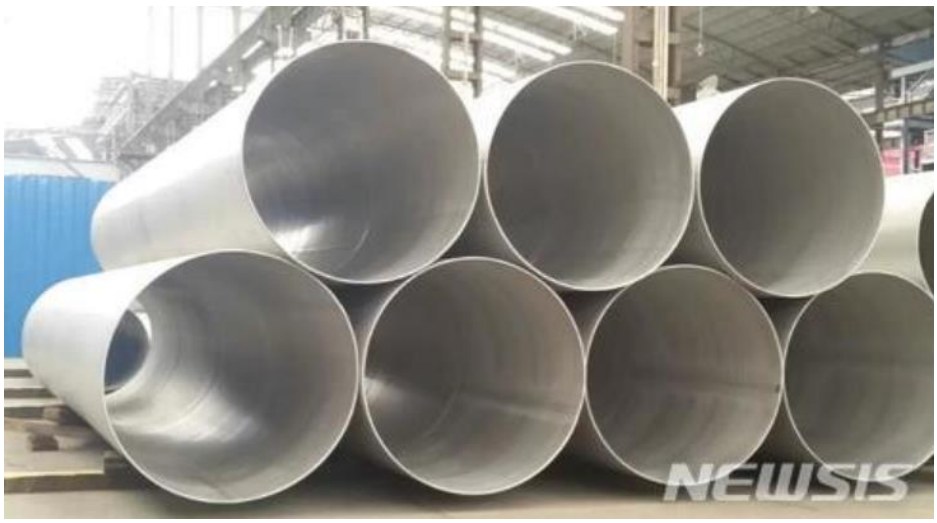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볼 때,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법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며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 월 미국 기업들의 청원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차례로 거쳐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 등의 제품이 미국에 불공정한 가격에 수출됐다고 판단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며, 오는 4 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된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한국은 미국에 연간(2017 년 기준) 1 억 5 천만 달러(약 1 천 690 억원)어치를 수출했으며 캐나다는 1 억 8 천만 달러, 터키는 5 천 700 만 달러, 그리스는 1 천 100 만 달러 상당을 각각 미국에 수출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현대 RB 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9.3% 비율로 제품을 덤핑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세아제강의 보조금 비율을 27.42%로 산정했으며 휴스틸과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범위인 0.01%, 0.44%로 판단했다. 나머지 업체의 보조금 비율은 9.29%로 산정됐다.

캐나다산 제품들의 덤핑률은 12.32% 그리스는 9.96%, 터키는 4.55~5.05%로 판정됐고 터키의 보조금 비율은 0.92~3.72%로 산정됐다. (출처:연합뉴스)

★ KCC 1 분강의

미국으로 수출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대형구경강관의 HS CODE 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조하시어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S코드	품목명
7305.11, 7305.12, 7305.19, 7305.31, 7305.39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

철강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 美,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이전 관세율의 3 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넥스틸 59.09%, 세아제강 26.47%, 현대제철 41.53%에 달하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2016~2017 년)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송유관은 대미(對美) 수출 물량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 금액으로는 5 억달러(약 5500 억원)가 넘는 품목이어서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출처:조선일보)

★ KCC 1 분강의

상기에서 언급된 송유관의 HS CODE 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조하시어 업무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7305.11/12/19, 7306.19	송유관(Welded Line Pipe)

철강

EU, 내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쿼터 초과 물량에 25% 관세

유럽연합(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과 함께 주요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으로, 2019 년 2 월 2 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 개이며, EU 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에 2015~2017 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EU 는 지난해 7 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적용했기 때문에 **105% 쿼터는 올해 6 월 30 일까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2021 년 6 월까지 매년 무관세 쿼터가 약 5%씩 증가합니다.**

쿼터는 국가별 배정이 아니라, 전체 물량 내에서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물량을 가져가기는 '글로벌 쿼터' 방식이어서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합니다.**

EU 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해, 우리나라는 냉연강판, 도금 강판, 전기강판 등 11 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출처:KBS 뉴스)

★ KCC 1 분강의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입니다.

목재

원목마루업계, '관세폭탄'에 패닉상태

2017 년 인천세관 FTA 부서에서 원산지 증명 검증을 확인하던 중 개별적으로 원목마루수입업체들을 불러 10%의 조정관세로 자율신고토록 권고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원목마루를 합판으로 보고 10%의 조정관세를 요구한 것이다. 원목마루수입을 오래 해 온 C 회사는 품목분류심사를 신청해 바로잡고자 했으나 두 번의 판정 모두 '2.5mm 이하의 단판이 붙여진 원목마루는 합판이다'라는 판정을 받고 말았다.

이에 따라 지난 5 년 동안 지금까지 낸 관세보다 낮게 낸 업체는 조정관세 10%로 수정신고 해 납부하고, 중국산 원목마루인 경우 중국산 합판 반덤핑관세 17.48%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게 눈앞에 현실이 되면서 해당 업계는 도저히 업을 할 수 없는 패닉상태에 빠지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더 내야 할 관세가 경우 많게는 50 억 원에 달하고 적어도 수십억에서 수억 원씩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 이대로 가면 폐업이나 파산에 이르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확보한 공사물량 조차도 발주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목마루 업계는 원목판 2mm 인 마루가 3mm 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유럽의 표준을 참고하여 2.5mm 이상의 원목마루에 한 해 합판이 아닌 원목마루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지난달 18 일 수입 원목마루 업체 8 곳의 대표들은 서울의 한 마루회사에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관세청의 세금 추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루업체들 사이의 의견을 모아 하나로 통일하고, 계속 모여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난달 22 일 하남 모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협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법률법인에 일을 맡길지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의

견이 개진되었다. 지난달 25 일에는 협회발족으로 위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폭탄'사건의 발단은 원목마루 완제품(합판 위에 1.2~4mm 두께의 원목판을 집성한 제품) 수입해서 들여올 때, 관세청이 이것을 '마루판 HSK 코드'가 아닌 '합판 HSK 코드'로 품목분류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마루업체들은 원목마루에 대해 명확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HSK 코드인 4412.94-1000~3000 / 4412.99-4911 ~9911 / 4418.73-9000 / 4418.75-9000 등으로 5.8~10%의 관세를 납부해오고 있었다. C 업체가 2017 년 11 월 대전 품목분류 위원회에 품목 분류 심사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HSK 코드는 4412.33-5000(활엽수무늬목치장합판에 해당)이었다. 황당한 것은 이 코드가 마루판 코드가 아닌 합판 코드라는 점이다. 심사를 요청한 업체는 대전 품목분류 위원회에 작년 5 월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에 대해서 해당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마루판은 수종과 표면 처리한 단판의 두께에 따라 합판으로 분류될 수 있고, 베니어패널로 분류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로 분류될 수 있다. 마루판이 합판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4412.33 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수입업체들은 통관 과정에서 마루판을 그때그때 분석하고, 정확한 HSK 코드를 해석한 뒤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를 하는 것이다. 이때는 분류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덤핑관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원목마루 완제품을 '마루판'이 아닌 '합판'으로 판정함에 따라 기존에 5.8%를 내고 있던 업체들은 추가로 4.2%를 합산한 조정관세 10%를 내고, 여기에 중국산 합판 반덤핑관세 17.48%까지 합산한 총 27.48%의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직 HSK 코드 해설서와 유럽표준화위원회와 EU 해설서를 기반으로 분류, 2mm 단판을 합판과 교차해서 붙인다는 이유로 원목마루를 마루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합판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나 마루전문가는 공통적으로 "해석의 오류가 있다. 마루는 합판과 다르다"며 "마루는 바닥을 영구적 목적으로 장식하는 완성 제품이기 때문에 합판처럼 소재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루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질표시와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 15 개 목제제품 중의 하나다. 여기에서도 합판과 마루판은 각각 다른 품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관세평가분류원이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에서 준용한 파켓마루는 단판 조각을 세공하여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든 제품으로 현재의 원목판을 붙인 원목마루와는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한다.

HSK 4412.33-
5000 코드는 합판 위에 활엽수 무늬목을 치장하여 인테리어 제품 또는 가구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장식요소를 가미한 합판소재일 뿐 원목마루의 코드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SK 4412.33-
5000 에 정의된 합판을 소재로 제조된 합판마루라 하더라도 마루제품이지 합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의 목재마루는 기계화된 라인을 따라 쪽맞춤이 가능하도록 가공되고 도장 또는 표면재를 적층해서 제조되는 최종 완제품이기 때문에 4418 의 '나무로 만든 건축건구와 목공품'쪽에 파켓마루와는 다른 코드를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품목분류체계로는 현대식 합판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원목마루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지금의 품목분류체계로 판정하려다 보니 이와 같이 원목마루가 활엽수무늬목치장합판에 해당하는 코드로 해석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게 마루전문가의 시각이다.

또한 마루판을 합판코드로 판정해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이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의 위험도 있고, 국내 마루제조사의 피해도 전무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중국산 합판의 반덤핑제조사 협회인 한국합판보드협회도 중국산 원목마루판에 반덤핑부과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해당 협회는 중국산 합판의 반덤핑이 원목마루 업체로 불똥이 튀니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원목마루 수입업체들은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단판 두께 3mm 이상의 마루를 수입해 오거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또한 최근 리모델링 수요가 늘면서 원목마루시장이 확대될 조짐이 있었는데, 이 문제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A 마루업체 대표는 "마루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마루와 합판이 전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관세청을 설득하고, 수입 원목마루가 반덤핑대상이 아니라는 탄원서나 확인서를 재경부와 무역위원회에 시급히 제출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B 마루업체 대표는 이번 기회에 "협회를 구성해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한국목재신문)

모바일

인도 정부, 모바일부품 관세부과 보류

인도 정부가 휴대전화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인상하려던 계획을 업계의 요청에 따라 철회했습니다.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와 모바일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정보통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관세 인상 고지문을 삭제했습니다. **이 고지문에는 인도 정부가 2019 년 회계연도(2019 년 4 월부터 2020 년 3 월) 중에 도입하려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신규 부과 조치를 두 달 앞당겨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무관세인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에 지난 2 월 1 일부터 10%의 관세를 신규 부과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의 예고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관련 부품 대부분을 수입해 인도에서 조립하는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상당한 가격 인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등은 인도 정부의 애초 방침에 맞춰 내년 4 월께 생산 목표로 현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설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관련 관세 인상 정책을 내년 4 월 1 일로 연기하기 위해 첫 번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같은 업체는 한숨 돌리면서 시간을 갖고 현지에 관련 제조공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의 관세 인상 추진 계획과 관련해 청원서를 보내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누 카푸르 인도 법인 상무 명의로 된 청원서에서 관세 인상이 앞당겨지면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인도에서 갤럭시 노트 9 나 S9 같은 플래그십 휴대전화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KBS 뉴스)